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의무〉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3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전문외국인력 현황	3
3. 개정안의 검토	4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2. 제 출 일: 2024. 11. 20.
3. 회 부 일: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u>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한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 ----- ----- ----- ----- ----- <u>마련하여야</u> ----- -----.

2. 전문외국인력 현황

현행 외국인력 비자제도를 보면,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고용계약 등을 통해 입국하는 취업자격 체류인력과, 취업 자체가 체류 원인은 아니나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거주(F-2)·영주(F-5)·유학생(D-2)·재외동포(F-4)·결혼이민자(F-6) 등이 있으며, 이외에 창업인력(D-10-2, D-8-4)도 외국인력에 포함될 수 있음.

2025년 2월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7만명 중 전문인력은 9.4만명(16.4%)으로, 취업자격 외국인의 대다수는 단순기능인력 47만명(82.9%)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자격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업무유형·자격	인원
전문인력	단기취업(C-4)	3,039
	교수(E-1)	1,846
	회화지도(E-2)	14,135
	연구(E-3)	3,294
	기술지도(E-4)	208
	전문직업(E-5)	210
	예술흥행(E-6)	4,312
	특정활동(E-7)	66,646
	소계	93,690
단순기능인력	계절근로(E-8)	22,421
	비전문취업(E-9)	337,536
	선원취업(E-10)	21,755
	방문취업(H-2)	92,136
	소계	473,848
기타	관광취업(H-1)	3,822
합계		571,360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5년 2월)

전문외국인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6조는 전문외국인력을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하지는 않아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인력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개발 및 개선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과 각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사업·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적인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¹⁾이며, 숙련인력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²⁾으로 정의하고 있음.³⁾

3. 개정안의 검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131만 명에서 2040년 5,006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2072년에는 3,622만 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에 3,417만 명이나, 2072년에는 1,65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63.4세 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⁴⁾

1) 비자 예시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E-7-1) 및 준전문인력(E-7-2)

2) 비자 예시 : 특정활동(E-7) 중 일반기능인력(E-7-3) 및 숙련기능인력(E-7-4)

3)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2024. 7., p.5.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 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력’이 주목 받고 있음.⁵⁾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역시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음.⁶⁾⁷⁾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 제9조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5)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2024. 7., p.1.

6)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22년 1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하였음(*2022년 말까지 한시적 대면 인터뷰 면제 등, ** 바이오, 에너지, 환경, 지질, 해양, 클라우드 컴퓨팅, 경제학, 재정분석, 데이터 분석 등)

(중국)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창업자 등 해외 고급인력 유치정책을 펴온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 비자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일본)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2013년 12월),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도입(2017년 1월, 종전 5년 → 1년)] 등 외국 전문인력 유치 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1년 22.8%로 4.3%p 증가하였음.

(대만)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원화 1억 3천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을 완화하였음.

7)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2022. 12. 8.)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⁸⁾ 이러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첨단 글로벌 인재 확보,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수립·시행한바 있음.⁹⁾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법무부, 47p.~53p.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주요 추진 과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u>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u>
	<u>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u>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자료 :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자료 재구성

한편, 개정안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보다 단순노무 인력·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외국인력 수급계획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문 의 처
02)6788-5057

-
- 10)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하나의 주요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지역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역사회 중심의 이민자 정책참여 및 인프라 강화 등의 세부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법무부, 53p.~55p.)